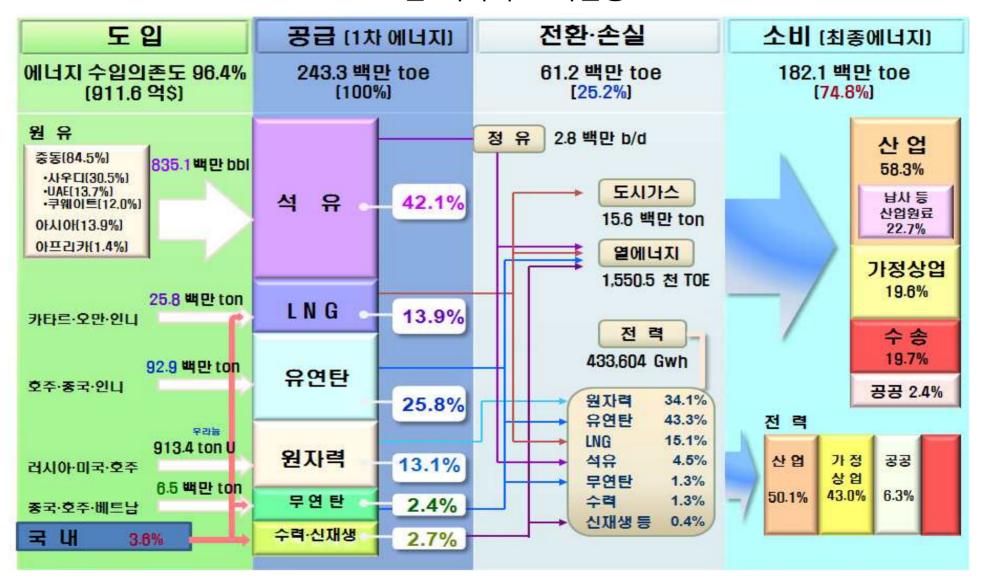
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 비교

| | 배출권거래제 | 탄소세 | 자발적협약 | 보조금 | 직접규제 |
|---------|---|---|--|--|---|
| 경제적 효율성 | -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자 범위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우월함. | - 경제적 효율성 우월. 세수환원이 "이중배당"을 실현하면, 배출권거래제 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우월함. | - 다소 낮음 참가기업의 온실가스 저감비용 측정능력과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적정목표 설정 능력에 의해 결정됨. | - 다소 낮음 대상기업들은 온실가스 저감비용과 보조금 수준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저감시설의 채택을 결정. | - 낮음 각 기업의 저감비용에 관계없이 규제의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에, 경제적 효율성이 자발적협약보다도 낮음. |
| 적용범위 | - 기본적으로, 상류부문 접근은 모든 부문에 적용되지만, 하류부문 접근은 대규모 에너지 소비자에게만 적용됨. - 가정 및 수송부문에 대한 감축 효과가 일반적으로 낮음. | -모든 상류부문에 적용. 그러나, 가정 및 수송부문에 대한 감축 효과가 일반적으로 낮음. | 적용됨. | - 기본적으로 산업, 가정 및 수송 등 모든 부문의 배출원에 적용될 수 있음. -그러나 각각 독립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, 많은 온실가스 배출원이 정책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큼. | - 기본적으로 산업, 가정 및 수송 등 모든 부문의 배출원에 적용될 수 있으나, 현실적으로 누락되는 배출원이 있을 수 있음. |

< 2009년 에너지 소비현황 >



| | 배출권거래제 | 탄소세 | 자발적협약 | 보조금 | 직접규제 |
|------------------|--|--|---|--|--|
| 전체 배출량관리 | - 전체 배출량관리가 용이함. | - 전체 배출량관리가 어려움. 최적 탄소세율이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에 의해 결정됨. | - 자발적 협약에 의한 감축량과 국가전체의 감축목표의 상대적 크기와 자발적 협약에 의한 감축의무가 실제로 이행되느냐에 의해 결정됨. | - 보조금제도만 도입될 경우, 전체 배출량 관리가 거의 불가능함. | - 전체 배출량 관리가 거의 불가능함. |
| 형평성 및 배출자의 부담 | - 배출권의 초기 배분방법과 정부수입(경매)의 환원방법에 의해 참여자의 부담이 크게 변화 함. -특정 배출자의 경우, 원래의 저감비용보다 부담을 적게 받을 수 있음. | -세수환원 방법에 의해 결정됨. 각 배출자에 환원되는 세수가 각 배출자가 납부하는 탄소세와 일치할 경우, 온실가스 저감비용 이외의 추가적인 부담 없음. 그러나, 세수가 타 조세를 낮추는데 사용될 경우, 각 배출자의 부담은 변화함. | - 각 배출자의 한계저감비용 이외의 추가적인 부담 없음.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자발적인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기업간의 형평성은 높음그러나,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배출자와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음. |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, 배출자의 부담이 저감비용보다 낮음. 그러나,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, 부담이 조세 납부자에게 전가됨. | - 배출자간의 부담이 크게 다름. - 각 배출자의 저감비용과 과거 배출량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, 배출자간 부담의 차이가 타 정책수단의 경우보다 큼. |

| | 배출권거래제 | 탄소세 | 자발적협약 | 보조금 | 직접규제 |
|---------|---|--|--|--|--|
| 정책 수용성 | - 배출권의 초기 배분방법과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수준에 대한 의견수렴이 어렵기 때문에, 정책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강한 반대가 있을 수 있음. | - 온실가스 감축비용 이외에 조세를 납부해야하고, 세수활용 방법에 따른 배출자가 부담의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, 특정 배출자들의 강한 반대가 있을 수 있음. -타 조세정책과의 조화도 필요함. | - 산업계의 강한 수용 의지에도 불구하고, 일반 대중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가 있음. | - 정책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. - 그러나 재원마련에 문제가 있음. | - 과거 여러 가지 도입 경험으로 인하여 정책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음. |
| 기술개발 촉진 | - 가격기능을 통한 간접적 유인효과. - 직접적인 기술개발 촉진은 없으나, 배출권의 경매를 통한 정부수입을 기술개발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경우, 어느 정도의 직접적 효과 있을 수 있음. | - 가격기능을 통한 간접적 유인효과. - 탄소세를 통한 세수입을 기술개발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경우, 어느 정도의 직접적 효과 있을 수 있음. | 가격기능을 통한 간접적 유인효과.직접적인 기술개발 촉진 효과 없음. | - 직접적 기술개발 촉진 가능. | - 직접적 기술개발 촉진 가능. |

| | 배출권거래제 | 탄소세 | 자발적협약 | 보조금 | 직접규제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|--|--|--|
| 환경의식 중진 및 홍보효과 | - 가정 및 개인을 대상으로 도입되지 않을 경우, 환경의식 증진 및 홍보효과 미미함. | - 탄소세 징수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름. | - 자발적 참가에 의한 산업계 홍보효과는 크지만, 일반 대중에 대한 효과 미미함. | -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에 의한 간접적 효과. | - 효과적임. |
| 전체적 평가 | - 경제적 효과성,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, 기후협약의 교토메카니즘과의 연계성에서 우월함. - 배출권 초기분배 및 산업계의 수용성이 적절히 해결되면,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정책으로서의 우위성 높음. - 가정 및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조정책 필요. | 적용범위의 포괄성 및 온실가스 감축 동기 부여에서 우월함. 기후변화협약의 교토메카니즘과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. 가정 및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조정책 필요. | -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으로서 우월함. 그러나, 일반대중의 지지를 위해서 감축의무 수준 결정과 의무이행의 필수적임. - 일반대중의 지지가 있을 경우, 타 정책수단과의 결합을 통해 도입될 수 있음. | 제한적인 적용범위와 효율성으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의 도입은 부적절. 장기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보조정책으로서 도입 가능. | - 적용범위의 포괄성 우월 - 복잡하고 수많은 규제기준 도입 및 많은 감시비용으로 인하여 핵심 정책수단으로서의 도입은 부적절. - 가정 및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보조정책 으로서의 효율성 높음. |

국내배출권거래제 관련 주요 쟁점사항 요약

| 쟁점사항 | 주요 선택 옵션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배출권의 법적지위 | 배출허가(license to emit); 재산권(property right); 등 | | |
| 배출권거래 대상 온실가스 | 화석연료 연소를 통한 이산화탄소; 메탄과 아산화질소; HFCs, PFCs, SF6 등 | | |
| 감축목표 설정 기준 | 절대 배출량; 원단위(예: tCO2/mwh) | | |
| | 상류부문 접근방법 화석연료 생산, 수입 그리고 판매하는 기업 | | |
| 배출권거래 참여대상 | 하류부문 접근방법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는 기업, 공공부문, 수송부문 및 가계부문 등 | | |
| | 혼합형 접근방법 상류부문+하류부문; 상류부문+전력부문; 전력부문+하류부문 등 | | |
| 배출권 배분방법 | 무상분배(grandfathering, benchmarking 등); 경매(auction); 혼합배분(hybrid) 등 | | |
| 배출목표 결정방식 | Cap-and-Trade, Baseline-and-Credit, 혼합형 | | |
| 배출권 거래방법 | 협의거래(negotiated trade); 지정거래(listed trade) 등 | | |
| 의무준수체계 | 부과금(charge) 부과; 일반공개; 차기 배출권 배분량 차감; 행정명령; 벌과금(penalty) 부과 등 | | |
| 배출권의 예치 및 차입 | 허가; 불허; 일정비율 상한 도입 등 | | |

EU-ETS의 단계별 주요 내용

| | 제 1단계 (2005~2007) | 제 2단계 (2008~2012) | 제 3단계 (2013~2020) |
|------|---|--|---|
| 삭감목표 | • 05년 배출량대비 +8.3% (2005~2007년 평균) | • 05년 배출량대비 5.6% 감축 (2008~2012년 평균) |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1% 감축2013년 이후 매년 1.74% 할당량 삭감 |
| 삭감실적 | • +0.98% (2005년 대비 2007년 배출실적) | • -3.06% (2007년 대비 2008년 배출실적) | • N/A |
| 할당방법 | 무상배분 할당 중심 경매는 최대 5%까지 가능 실제 실시한 나라는 없음 | 무상배분 할당 중심 일부국가는 벤치마케팅에 의해 할당 경매는 최대 10% 허용 (실시 예정인 나라는 제1단계보다 증가) | 국가할당계획(NAP) 폐지. EU차원의 중앙집중식 할당 경매를 주된 할당방식으로 선정 발전부문: 2013년부터 100% 경매 산업부문: 2013년 20% 경매. 2020년 70% 까지 균등확대. 2027년 무상할당 전면폐지 경매수입의 최소 50%는 EU와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사용 |
| 대상가스 | • CO2 | • CO2 • 일부국가는 자발적으로 다른 온실가스로 확대 | • CO2, N2O(화학), PFC(알루미늄) |
| 대상부문 | • 에너지 전환, 산업 부문 (약 11,500사업소) | • 항공부문 확대 여부 2012년 이후 결정 | • 알루미늄, 석유화학(암모니아 등), 항공부문 등 추가 • 소규모 사업장에 opt-out 허용 |

EU-ETS의 단계별 주요 내용

| | 제 1단계 (2005~2007) | 제 2단계 (2008~2012) | 제 3단계 (2013~2020)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적용범위 | • EU 지역 내의 CO2 배출량의 약 49% | • N/A | • N/A |
| 과징금 | • €40/t-CO ₂ | • €100/t-CO ₂ | €100/t-CO₂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해 매년 조정 |
| CDM/JI 크레딧 사용한도 | 제한없음실제 실적 없음 | • 최대 20% | • 최대 50% |
| 탄소누출 문제 대응 | • 특별한 규정 없음 | • 특별한 규정 없음. | Carbon Leakage 위험에 노출된 산업부문은 무상배분 선정기준: (1) 탄소집약도 5% 이상 & 무역집약도 10% 이상, (2) 탄소집약도 30% 이상, 또는 (3) 무역집약도 30% 이상 무상배분은 벤치마크에 의해 할당 (부문별 상위 10% 사업장 기준) 탄소비용 집약도 = 탄소거래에 의한 직간접 생산비용 증가분/총부가가치 무역집약도 = 부문의 역외 수출입 총액/부문별 시장규모(총매출액과 역외수입액의 합) |

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계획

| 조 항 | 원 안 | 수 정 안 |
|--------|--|--|
| 도입시기 | 2013년 1월 1일 | 2015년 1월 1일 |
| 무상할당 | 1기: 90%이상 무상할당 2기: 대통령령으로 규정 3기: 100% 유상할당 | 1기: 95%이상 무상할당 2기 이후: 국제동향 및 산업경쟁력 등을 감안 대통령령으로 규정 |
| 할당위원장 | 구체적 명시 없음 | 기획재정부 장관 |
| 과징금 | 초과 배출량 론당 100만원 범위 내, 평균가격의 5배 이내 | 론당 평균가격의 3배 이하로 부과 (100만원 상한 삭제) |
| 과태료 | 5000만원 이하 | 1000만원 이하 |
| 적용대상 | 목표관리제 적용 전 부문 |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중 일정량 이상의 배출 업체. 준비여건 및 국제경쟁력 고려하여 부문 및 업종 결정 |
| 배출권 이월 | 계획기간 간 이월 불허 | 계획기간 간 이월 허용[1기→2기 불허] |
| 생산량 반영 | 경제상황 급변 등의 경우, 정부가 할당계획 변경 | 예상치 못한 생산량 증감 시, 해당업체도 할당 량 변경신청 가능 |
| 산업계 지원 | 배출권거래제 관련 수익으로 기금 조성 |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금융·세제, 보조 금 지급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근거 마련 |